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51022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엘

담당변호사 이지훈, 임아영

피고(선정당사자)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최대건, 김태용, 김유정

변론 종결2023. 4. 26.

판결 선고2023. 5. 24.

주 문

- 선정자 C은 원고에게 21,319,868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22. 4. 11.부터 2022. 4.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선정자 C과 피고(선정당사자) B 사이에 2021. 9. 6. 체결된 매매예약, 2021.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B은 선정자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21. 9. 23. 접수 제138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21. 10. 26. 접수 제152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선정자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8. 8. 14. C에게 대출기간을 1년(2018. 8. 14.부터 2019. 8. 14.까지), 대출이자율을 변동금리(시장금리부 변동여신: 금융채 1년 + 6%), 지연배상금을 최고 연 15% 이내(대출이자율 + 연체가산금리 3%)로 각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2022. 4. 10. 기준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2018. 8. 14.	20,000,000	20,000,000	1,319,868	21,319,868	2022. 4. 10.까지 이자를 계산한 것
--------------	------------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1,319,86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산일 다음날인 2022.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4. 27.까지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C은 2021. 9. 23.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C은 2021.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18. 8. 14. 성립하였고, C은 그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C의 무자력 가)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무 외에도 D 주식회사에 대하여 92,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른 한편, 을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8부터 2021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 C은 레이 차량, 화물 차량,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시세는 4,620,000원, 레이 차량의 시세는 1,115,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예금채권, 주식 등 다른 재산으로 현존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무자력에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명의로 경락받은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C의 소득이 높다고 들었고, 고가의 바이크와 다수 법인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기에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명의로 경락받은 것이라면, 피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이 되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C에 대하여 경락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질 뿐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악의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게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회근

별지